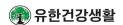
# 윤리강령

[ 제정 : 2022. 10. 21 ]



# -목 차-

서		분		2
			총칙	
제	2	장	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	4
제	3	장	임직원의 기본 윤리	4
제	4	장	임직원에 대한 책임	8
제	5	장	사회에 대한 책임	10
부:	칙			1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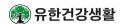
### 서 문

우리는 유일한 박사님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,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, 고객·주주·협력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이에 우리는 신의, 성실, 정직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,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.

본 윤리강령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임직원으로서 자긍심과 기본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 지침입니다.

우리는 본 윤리강령이 형식적,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, 회사가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

# 제 1 장 총칙

#### 제1조 (목적)

본 윤리강령은 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 유한건강생활의 (이하 "회사"라 한다) 청렴유지 및 건전한 조직질서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적용대상)

본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제3조 (정의)

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직원"이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모든 임원과 직원을 일컫는다.
- 2. "규정책임자"이라 함은 회사의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서, 대표이사가 임명한 자로한다.

#### 제4조 (준수의무와 책임)

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###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#### 제5조 (고객 가치 제공)

- 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.
- ② 고객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천연물을 과학으로 끊임없이 검증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해야 하며 판매 기본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.

#### 제6조 (고객의 이익 보호)

- ①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다.
- ②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한다.
- ③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 제 3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
#### 제7조 (건전한 근무환경 조성)

- ① 임직원은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신념인 청지기 정신을 이어서 회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받으며 인종, 국적,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정치적 견해,

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고용, 승진, 교육, 보상,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.

#### 제8조 (공정한 직무 수행)

- ①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,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.

#### 제9조 (자산 관리 및 보호)

- ① 임직원은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회사의 자산과 비용을 직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관련 직무 수행자는 회사 자산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한다.
- ② 임직원은 업무 수행 및 작업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및 '무사고 작업장'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.

#### 제10조 (공정경쟁과 법규준수)

- ①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하고,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아니 한다.
- ②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고,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,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경쟁사와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, 담합과 관련될 것으로 간주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. 또한, 이를 즉시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.

#### 제11조 (협력 업체와 공존공영)

- ① 자격을 갖춘 모든 거래 희망업체에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.
- ② 협력 업체와의 거래 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한다. 또한,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한다.
- ③ 협력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준수하며, 협력 업체의 품질과 신뢰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윤리, 안전, 환경, 노동,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④ 협력 업체와의 거래 시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을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문서화하고, 거래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.
- ⑤ 고정 협력 업체와 거래 단절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, 부당한 방법 과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⑥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, 상담은 회사 내지정된 장소나 개방된 장소에서 진행한다.

#### 제12조 (이권개입 등 금지)

- ① 임직원은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3조 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

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·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

따라

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

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·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4조 (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)

-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·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회계기록,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(정보의 유출 및 이용 금지)

-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중요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유가증권(주식 및 전환사채,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함)이나 회사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, 기타 여하한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6조 (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)

- ①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회사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)

임직원은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음란 사이트 접속·불건전한 채팅·도박·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
- 2.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
#### 제18조 (사행성 행위의 제한)

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9조 (성희롱 금지)

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
- 2.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
- 3.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- 4.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- 5.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
- 6.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

#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#### 제20조 (공정한 대우)

①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보상한다.

**유한건강생활** 

②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.

#### 제21조 (경영개선건의)

- ① 임직원은 경영상의 건의사항이 있을 시 대표이사에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건의된 사항의 위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아우름협의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#### 제22조 (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)

-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규정책임자, 대표이사에게 신고할수 있다.
- ② 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23조 (신고인의 신분보장)

- ① 대표이사와 규정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 또는 규정책임자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표이사와 규정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#### 제24조 (포상 및 징계)

유한건강생활

- ①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포상 및 징계를 평가하고 심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의결 절차를 거친다. 인사위원회의 주관은 인사 부서에서 담당한다.

#### 제25조 (규정책임자)

- ① 규정책임자는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, 다른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규정의 교육·상담에 관한 사항
  - 2.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·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
  - 3. 인사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수행
  - 4.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26조 (규정의 운영)

대표이사는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 제 5 장 사회에 대한 책임

#### 제27조 (주주의 이익보호)

① 주주에 대한 보답으로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.

②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.

#### 제28조 (사회 공헌)

- ① 고용의 창출을 가져오며,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.

#### 제29조 (환경 보호)

- ①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,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
# 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